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시조직인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0년 10월 4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고, 통일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평화정책과, 북한인권과,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운영과 및 조사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9월 30일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9.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6·25전쟁 납북자 기념사업 및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밑에 2023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 단위)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는 한편,

통일정책실, 정세분석국, 북한인권기록센터 내에 신규업무를 반영하고, 교류협력실 내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6조의 2 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직제 제6조의 2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제6조제1항 중 “가등급으로 하고, 통일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10조 제1항에 따라 통일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일정책협력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통일정책협력관은 직제 제10조 제3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및 제14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6조제6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평화 공감대 확산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제6조의2제1항 중 “가등급으로 하고, 교류협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교류협력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교류협력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류협력정책관은 직제 제10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6조의2제3항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남북한 간 관광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추진

제6조의2제6항제1호 중 “관광(경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체육”을 “체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에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13.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14.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대북 협상전략 수립 등 남북간 협의 지원

15.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유관국 및 국제기구 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16.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위성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제8조제2항 중 “인도협력기획과·북한인권과·이산가족과 및 정착지원과를”을 “인도협력기획과·북한인권과·이산가족과·정착지원과 및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로, “기술서기관”을 “기술서기관으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6.25전쟁 납북 관련 기념사업 추진
2. 전시실(상설 및 기획) 관리 및 운영
3. 전시콘텐츠 기획 및 개발
4. 6.25전쟁 납북 관련 유물의 구입, 수집, 보존 및 관리
5. 국내외 기념관과의 학술 및 연구 교류
6. 6.25전쟁 납북 관련 교육 및 홍보
7. 수장고 및 자료실 관리 및 운영
8. 전시관련 자료 및 기념관 홍보자료 발간
9. 관람객 안내 및 해설

10.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11. 국내외 법인·단체 지원

12. 기념관 홈페이지 운영

13. 학예, 시설, 미화, 경비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채용, 급여, 복지, 복
무관리

14. 국유재산 관리 및 물품의 구매·조달

15. 시설·장비의 유지 및 관리

16.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17. 그 밖에 기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20조의3제3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관리·운영

제21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22조제9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별표 9 제1호 통일정책실 평화정책과의 평가기간란, 같은 호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의 평가기간란, 같은 표 제2호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호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의 평가기간란 중 “2
020년 9월 30일”을 각각 “2021년 9월 30일”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장은 2023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장이 인도협력국장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이산가족과장이 보좌한다.

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6조 관련)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존속기한: 2021년 12월 31일)

총계	7
일반직 계	7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사무운영서기보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기획조정실장) ① 기획 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u>가등급으</u> <u>로</u>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 급은 <u>나등급</u> 으로 한다.	제2조의3(기획조정실장) ① ---- ----- ----- ----- <u>가등급</u> ----- ----- ----- ----- -----.
<신 설>	② 직제 제6조의 2 제1항에 따 라 <u>기획조정실장</u> 밑에 두는 보 좌기관은 <u>정책기획관</u> 으로 하며, <u>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u> <u>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u> <u>직무등급은 나등급</u> 으로 한다.
<신 설>	③ <u>정책기획관은 직제 제6조의</u> <u>2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u> <u>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u>
② ~ ⑦ (생 략)	④ ~ ⑨ (현행 제2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제6조(통일정책실) ① 통일정책실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 의 직무등급은 <u>가등급</u> 으로 하 고, 통일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	제6조(통일정책실) ① ---- ----- ----- ----- <u>가등급</u> ----- -----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
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③ ~ ⑤ (생 략)

⑥ 평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 9. (생 략)

⑦ · ⑧ (생 략)

제6조의2(교류협력실) ① 교류협
력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

② 직제 제10조 제1항에 따라
통일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
관은 통일정책협력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통일정책협력관은 직제 제10
조 제3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2호, 제12호의
2, 제13호, 제13호의2, 제13호의
3 및 제14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평화 공감대 확산 관련 정
책의 수립 · 시행

4. ~ 9. (현행과 같음)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교류협력실) ① -----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
로 하고, 교류협력정책관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
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 교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8.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9. (생 략)

10.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기
본계획의 수립·운영

11.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대

----- 가등급-----

-----.

② 직제 제10조의2 제1항에 따
라 교류협력실장 밑에 두는 보
좌기관은 교류협력정책관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류협력정책관은 직제 제10
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
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 (현행과 같음)

<삭 제>

9.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북 협상전략 수립 등 남북간
협의 지원

12.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기
관, 법인, 단체, 유관국 및 국
제기구 등 국내외 협력에 관
한 사항

13.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국
민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
항

14. ~ 17. (생략)

④ 남북경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략)

<신설>

⑤ (생략)

⑥ 사회문화교류운영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한 간 예술, 관광(경제협
력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다), 체육, 역사, 언어, 저작권
분야 등 문화 관련 분야 교류
협력(이하 “문화 관련 분야 교
류협력”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추진

2. ~ 13. (생략)

<삭제>

<삭제>

14. ~ 17. (현행과 같음)

④ -----
-----.

1. ~ 18. (현행과 같음)

19. 남북한 간 관광과 관련된 정
책의 수립·추진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체육-----

2. ~ 13. (현행과 같음)

⑦·⑧ (생략) ⑨ 교류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⑦·⑧ (현행과 같음) ⑨ ----- -----. 1. ~ 11. (현행과 같음) <u>1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u> <u>13.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운영</u> <u>14.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남북 협상전략 수립 등 남북간 협의 지원</u> <u>15.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유관국 및 국제기구 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u> <u>16.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u>
제7조(정세분석국) ①·② (생략) ③ 정세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략) <u><신설></u> 19. ~ 21. (생략)	제7조(정세분석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8. (현행과 같음) <u>18의2. 위성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u> 19. ~ 21.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략)

제8조(인도협력국) ① (생략)

② 인도협력국에 인도협력기획과 · 북한인권과 · 이산가족과 및 정착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④ (생략)

⑤ 이산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략)

20. 납북자 관련 기념사업 추진 및 국내외 법인 · 단체 지원

21. ~ 23. (생략)

⑥ (생략)

<신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인도협력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도협력기획과 · 북한인권과 · 이산가족과 · 정착지원과 및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 기술서기관으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9. (현행과 같음)

<삭제>

21. ~ 2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6.25전쟁 납북 관련 기념사업 추진

2. 전시실(상설 및 기획) 관리 및 운영

3. 전시콘텐츠 기획 및 개발

4. 6.25전쟁 납북 관련 유물의

	<u>구입, 수집, 보존 및 관리</u> <u>5. 국내외 기념관과의 학술 및 연구 교류</u> <u>6. 6.25전쟁 남북 관련 교육 및 홍보</u> <u>7. 수장고 및 자료실 관리 및 운영</u> <u>8. 전시관련 자료 및 기념관 홍보자료 발간</u> <u>9. 관람객 안내 및 해설</u> <u>10.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u> <u>11. 국내외 법인·단체 지원</u> <u>12. 기념관 홈페이지 운영</u> <u>13. 학예, 시설, 미화, 경비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채용, 급여, 복지, 복무관리</u> <u>14. 국유재산 관리 및 물품의 구매·조달</u> <u>15. 시설·장비의 유지 및 관리</u> <u>16.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u> <u>17. 그 밖에 기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u>
제20조의3(북한인권기록센터) ① · ② (생략) ③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제20조의3(북한인권기록센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분장한다.

1. ~ 9. (생략)

<신설>

10. · 11. (생략)

④ (생략)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 ④ (생략)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⑧ (생략)

⑨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3과 같으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6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관리·운영

10. · 11.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7퍼센트-----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급 4명 및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u>5퍼센트</u>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4와 같다. ⑩ (생략)	----- -----. ----- ----- ----- ----- <u>7퍼센트</u>----- ----- -----. ⑩ (현행과 같음)
--	---